[용역계약서]		
1. 계 약 명	"잼톡 알파벳 교육 앱 1단계 "	
2. 계약금액	일금 사백만원정 (4,000,000 원) 부가세 해당사항없이 별도 특약으로 4대보험으로 갈음한다. - 지급조건은 세부계약 내용 참조	
3. 용역기간	2021.11.01 ~ 2021.12.26	
4. 기타 사항	- 작업진행은 상호협의 진행한다.	
5. 용역대금	대금지급조건 : 현금 지급(부가세 별도) 대금지급방식 :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지급 선금 50%, 2,000,000원 잔금 50% 2,000,000원개발 완료 후 지급	
6. 하자보수	용역 완료 후 1년 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하자보수	

# 2021년 11월 01일

"갑", "을" 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,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상호 1부씩 보관한다.

(갑) 자오이엔비	(을) 김상우
- 114-86-29881 <b>-</b>	930610-171116
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7길 20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4번길 17-7 102동 1103호
대표이사 이 선 교	김상육

#### 제 1조 (목 적)

본 계약은 "잼톡 알파벳 교육 앱 1단계 구축"을 위해 "갑"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"을"과의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조 (용역의 범위)

1. 본 계약에 따라 "을"이 "갑"에게 제공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"잼톡 알파벳 교육 앱 1단계 구축"을 위한 내용으로 한다.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

# 용역의 범위: "갑"이 요청하는 화면기획서 기준 협의된 업무내역

2. "갑" 은 "을"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수행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가는 별도의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한다. "을" 은 개발 일정에 대한 통보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을 "갑"에게 요청하고 이에 "갑"은 대금 지불을 이행한다.

### 제 3조 (추가비용에 대한 보존)

- 1. 제 2조에 의거하여 "갑"의 요구로 인하여 "을" 의 개발 범위를 초과하여 용역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,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"을"의 제반 비용은 "갑"의 부담으로 한다.
- 2. 전항의 경우 "을" 은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"갑"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#### 제 4조 (상호현조)

- 1. "갑"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환경 및 자료를 "을"에게 제공하여야 하고, 용역수행과정에서 "갑"과 "을"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.
- 2. "을" 은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용역 수행과 관련된 "갑"의 의견 및 요청사항 등을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3. "갑" 과 "을" 은 본 계약 및 부속 합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 및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혐의 조정 한다

#### 제 5조 (자료제공)

- 1. '을"이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"갑"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2. "을" 은 "갑" 이 그 목적을 한정하여 사전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"갑" 이 대여한 자료를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.

# 제 6조 업무보고 및 승인

- 1. "을'은 일정에 따라 "갑"에게 매월 진행한 업무 내역에 대한 월간보고를 해야 하며, "갑"은 본 계약에 서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 진행에 대한 승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. "갑" 이 업무보고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,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거절서를 즉시 "을"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3. "갑"으로 부터 승인 거절서를 받은 경우 "을"은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을 수정, 보완하여 재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, 재 승인 요청과 관련한 기준, 절차 및 승인 간주는 본 조의 규정에 따른다.
- 4.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"갑" 이 업무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가. "갑" 이 "을" 로부터 업무보고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수일 이내에 승인서나 거절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
- 나. "갑"이 교부한 업무보고 승인 거절서에 검수기준에 미달하는 항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

# 제 7조 (인도 및 설치)

- 1. 매월 진행 요청업무는 "갑"의 승인 완료 후 "을"은 즉시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"갑"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, 최종 산출물을 "갑"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2. "을" 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"갑"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최종산출물 인도와 동시에 갑에게 반납하여야한다.



3. "을" 은 "갑"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인도 및 설치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, "을"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"갑"이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"을"은 본 조의 의무를 면한다.

### 제 8조 (지적재산권 등)

- 1. "을" 이 유지보수 용역수행을 통해 생성하여 인도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재산권 및 지적 재산권은 "갑"에게 있다. 다만, 현행법상 제 3 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용한 상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관계는 상용 프로그램의 판매자와 "갑" 또는 "을"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다.
- 3. 제3자로부터 구매한 상용 프로그램 등의 사용으로 인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"을"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"갑"은 손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"을"을 면책 시켜야 하며, "갑"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"을"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.

## 제 9조 (하자보수)

1. "갑"의 요청에 의한 개발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서 에러발생 및 원상복귀가 필요한 하자에 대해서 "을"은 하자보수책임을 진다.

#### 제 10조 (계약의 해제)

- 1.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고,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2. 파산, 회사정리 등 명백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# 제 11조 (기성부분에 대한 정산 및 손해배상)

- 1. 제 13 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, 제 9 조에 따라 매월 완료보고가 승인된 경우,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.
- 2. 본 조 1 항의 경우,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"갑"은 매월 완료보고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 제 4 조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, "을"은 "갑'이 매월 완료보고를 승인한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기성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.

## 제 12조 (비밀유지)

일방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.

# 제 13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